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6238 제안연월일: 2020. 12. 레 아 기: 하구니도 9

제 안 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0742호)	송옥주	2020. 6.19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 체회의(2020. 9. 15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1176호)	장제원	2020. 6.30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 체회의(2020. 9. 15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1408호)	정부	2020. 7. 3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 체회의(2020. 9. 15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1518호)	박대수	2020. 7. 6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전 체회의(2020. 9. 22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3615호)	송옥주	2020. 9. 8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전 체회의(2020. 11. 12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4089호)	박대수	2020. 9.21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전 체회의(2020. 11. 12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4523호)	임이자	2020.10.14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전 체회의(2020. 11. 12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104608호)	안호영	2020.10.22	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13차 전 체회의(2020. 11. 12) 상정 후 제 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

2. 대안의 제안이유

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,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,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중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

하는 한편,

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·거래제도를 도입하고,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,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 완·개선하는 동시에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 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 6조제4항).
- 나.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%로 하되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원으로 설정하고,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 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(안 제37조).
- 다.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사업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(안 제43조).
- 라.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(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)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, 환경부장

- 관이 교체·환불·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(안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).
- 마.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,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(안 제58조 및 안 부칙 제8조).
- 바.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·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, 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%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8조의3. 제58조의4 신설 등)
- 사. 행위무능력·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 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 록 결격사유를 정비함(안 제69조의2).
- 아.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 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(안 제74조 신설 등).
- 자.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·징수 제도를 폐지하고,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

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(제76조의7ㆍ제76조의8 삭제).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제44조 및 제45조"를 "제44조, 제45조 및 제77조"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 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제36조"를 "제36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출부과금"을 "배출부과금(기본부과금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취소,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

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6조"를 "제36조제1항"으로, "2억원 이하의"를 "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환경부령으로 정한다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그 금액의 2분의 범위에서 가중(加重)하거나 감경(減輕)할 수 있다"로 한다.

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4.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

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을 "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"을 "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"을 "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(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)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외의 부분 중 "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(이하 "인증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"을 "인증시험대행기관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(이하 "인증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·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48조의3제2호 중 "제48조의2제2항"을 "제48조의2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48조의2제3항"을 "제48조의2제4항"으로 한다. 제51조제4항 본문 중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자동차제작자가"를 "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"로

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⑧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,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.
-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 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 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,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,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 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⑦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,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.
-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, 건설기계"를 "건설기계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6항 중 "전기자동차의 충전에"를 "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"로, "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"을 "전산망을"로 하고, 같은 조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
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제58조의2제1항 중 "관계"를 "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"로 한다.

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하고,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8조의3(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·거래 등)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·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.
 -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무 공해자동차 생산·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 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,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58조의4(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)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 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(이하 "기여금 납부의 무자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(이하 "기여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여금 납부 의무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

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지정한 기간 내 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.
-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,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의2제4호 중 "취소"를 "취소(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3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- ①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업체명,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외의 부분 중 "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(이하 "검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"을 "검사대행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4호중 "제74조제8항"을 "제74조제10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(이하 "검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·장비 등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4조의3제2호 중 "제74조의2제2항"을 "제74조의2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74조의2제3항"을 "제74조의2제4항"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"제74조제4항"을 "제74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중 "제74조제4항"을 "제74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.

제77조제1항 중 "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"를 "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각각 "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"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제3호 중 "제16조제5항"을 "제16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85조제2호 중 "제36조"를 "제36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89조제5호 중 "제36조"를 "제3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"제74조제3항"을 "제74조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"제74조제4항 본문"을 "제74조제6항 본문"으로 한다.

제90조제7호 중 "제53조제3항"을 "제53조제3항 본문·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"제74조 제4항 본문"을 "제74조제6항 본문"으로 한다.

8.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·환불·재매 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91조제3호 중 "제43조제4항"을 "제43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의2 중 "제48조의2제2항제1호"를 "제48조의2제3항제1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"제74조제4항 본문"을 "제74조제6항 본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"제74조제5항"을 "제74조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 중 "제74조제6항"을 "제74조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"제74조의2제2항제1호"를 "제74조의2제3항제1호"로 한다.

제92조제6호 중 "제43조제3항"을 "제43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5호중 "제58조의3제1항"을 "제58조의5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제51조제5항(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"를 "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"제74조제4항제1호"를 "제74조제6항제1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14호 중 "제74조제4항제2호"를 "제74조제6항제2호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1의3.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·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
- 8의2.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
- 14의2.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14의3.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58조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,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51조제7항·제8항, 제53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, 제74조, 제90조제7호·제8호,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·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7항·제8항, 제53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, 제90조제7호·제8호,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, 제51조제6항,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·거래,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 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의3,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·재활용에 관한 특례) 종전의 제58조

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.

- 제6조(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 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7조(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기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, 행정처분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8조(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9조(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 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

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.

제10조(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9조 제1항 중 "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2항·제5항"을 "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2항·제6항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배출허용기준) ①・② (생	제16조(배출허용기준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	3
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	
이상 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	
조, <u>제44조 및 제45조</u> 에서 같	제44조, 제45조 및 제77조
다)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	
한다) 또는 특별시·광역시 및	
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	
만 이상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	
다)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	
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	
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	
되거나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	
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	
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	
(이하 "대기관리권역"이라 한	
다)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	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	
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	
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	
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(기	
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	

용	시기를	포함한다)을	정할
수	있다.		

<신 설>

<u>④</u> ~ <u>⑥</u> (생 략)

- 제27조(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 - ②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 1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5조의2 부터 제35조의4까지, <u>제36조(허</u> 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제 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제 82조제1항제1호·제1호의3을 적 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.
 - ③ (생 략)
- 제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 저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

④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
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
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
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
듣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
여야 한다.
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∥27조(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)
① (현행과 같음)
②
제36조제1
<u>항</u>
③ (현행과 같음)
35조의2(배출부과금의 감면 등)
①

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<u>배출부과금</u>을 부과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 제36조(허가의 취소 등) (생 략)

<신 설>

제37조(과징금 처분) ① 환경부장 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----배출부과금(기본부과금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취소,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7조(과징금 처분) ① -----

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 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, 대외적인 신용·고용·물가등 국민경제, 그 밖에 공익에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 <단서 신설>

- 1. ~ 7. (생략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
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 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제36조제1항
<u>매출</u>
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
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<u>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</u>
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
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
<u>수 있다.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
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
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43조(비산먼지의 규제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

에	따른	조업정지	처분	대상
0]	되는	경우		

3 -----

------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되,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가중(加重)하거나 감경 (減輕)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비산먼지의 규제) ① (현 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이상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구역(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)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

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 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신 설>

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.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
<u>장은</u>
 .
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
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.
<u>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</u>
<u>장은 제4항</u>
<u>⑥</u>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
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<u>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사업이</u>
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
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
<u>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사업</u>
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
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
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

<신 설>

제48조의2(인증시험업무의 대행) ① (생 략) 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기관(이하 "인증시험대행기관" 이라 한다)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를 명할 수 있다.

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당한 사용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8조의2(인증시험업무의 대행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(이하 "인증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지정받은 사항중 인력·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인증시험대행기관-----
- -----
- _____
- -----.

-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
- 제48조의3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)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제48조의2제2항</u> 각 호의 금 지행위를 한 경우
 - 3. <u>제48조의2제3항</u>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제51조(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) ① ~ ③ (생 략)
 - ④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,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

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48조의3(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
정 취소 등)
·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48조의2제3항</u>
3. 제48조의2제4항
제51조(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
시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
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 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 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.

⑤ • ⑥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제53조(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 제53조(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 정) ① ~ ③ (생 략)

④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 항을 준용한다.

도록 <u>명할 수 있다</u>. 다만, <u>자동</u> ----<u>명하여야 한다</u>. -----<u>자동</u> 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----

- ⑤·⑥ (현행과 같음)
-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 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⑧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 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동차의 교체,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.

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 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고,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 한 후,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 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 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 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 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 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⑦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 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동차의 교체, 환불 또는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① ~ ④ (생 략)

-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 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 우(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 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 나,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 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(제3항제1호·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)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, 그 밖의

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.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건설기계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장치 • 부품

- ⑥ ~ ⑤ (생 략)
- ⑥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
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
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
 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
 을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
 따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<신 설>

①・⑧ (생 략)

제58조의2(저공해자동차의 보급)
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
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
(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
우를 포함한다)하는 자(이하
"자동차판매자"라 한다)가 연간

⑥ ~ ⓑ (현행과 같음)
<u>(16)</u>
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
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
<u>시설에</u> <u>전산</u>
<u>망을</u>
,
⑪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
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
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
른 전산망의 설치・운영에 필
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
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
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u>®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17항 및 제18항
과 같음)
제58조의2(저공해자동차의 보급)
①

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(이하 "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"라 한다)를 매년 <u>관계</u>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 략) <신 설> ---------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58조의3(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·거래등) ① 자동차판 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.

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
차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
나 무공해자동차 생산·수입
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
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
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
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
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

<신 설>

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 과실적의 이월·거래, 저공해자 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.

제58조의4(저공해자동차 보급 기 여금)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 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자동차판매자(이하 "기 여금 납부의무자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 해자동차 보급 기여금(이하 "기 여금"이라 한다)을 부과・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여금 납 부의무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 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저공 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

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 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 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 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지 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 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.

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 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⑥ 기여금의 부과기준, 부과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임차 등) (현행 제58조의3과 같

제58조의3(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제58조의5(저공해자동차의 구매・ · 임차 등) (생 략)

제58조의4(저공해자동차의 구매 · 임차 계획) (생 략)

· 임차 실적) (생 략)

제58조의6(저공해자동차의 구매 •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) (생 략)

제58조의7(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) (생 략)

제69조의2(결격 사유) 다음 각 호 제69조의2(결격 사유) -----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(생략)

제74조(자동차연료・첨가제 또는 제74조(자동차연료・첨가제 또는

음)

제58조의6(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 임차 계획) (현행 제58조의4와 같음)

제58조의5(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제58조의7(저공해자동차의 구매・ 임차 실적) (현행 제58조의5와 같음)

> 제58조의8(저공해자동차의 구매・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) (현행 제58조의6과 같음)

> 제58조의9(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) (현행 제58조의7 과 같음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(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)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촉매제의 검사 등) ① (생 략) 촉매제의 검사 등) ① (현행과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⑦ (생 략)

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74조의2(검사업무의 대행) ① 제74조의2(검사업무의 대행) ① (생 략)

<신 설>

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 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 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 야 한다.
- (5) ~ (9) (현행 제3항부터 제7항 까지와 같음)
- ⑩ ----- 제5항-----

- ①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 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, 주소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(현행과 같음)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(이하 "검사대행기관"이라 한 다)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<u>제74조제8항</u>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 사업무를 하는 행위

③ (생 략)

제74조의3(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) 환경부장관은 검사대 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.

전문기관(이하 "검사대행기관"
이라 한다)은 지정받은 사항 중
시설·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
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
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
<u> 여야 한다.</u>
③ 검사대행기관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74조제10항</u>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74조의3(검사대행기관의 지정
취소 등)
<u>.</u>

- 1. (생략)
- 2. <u>제74조의2제2항</u> 각 호의 금 지행위를 한 경우
- 3. <u>제74조의2제3항</u>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제75조(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·공급·판매 중지 및 회수) ① 환경부장관은 <u>제7</u> 4조제4항에 따라 공급·판매 또 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·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<u>제74조제4항</u>에 따라 공급·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·첨가 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- 제76조의7(온실가스 저배출 자동 차에 대한 지원) ① 환경부장 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(이하 "저탄소차"라 한

1. (현행과 같음)	
2. 제74조의2제3항	
3. <u>제74조의2제4항</u>	
	1
제75조(자동차연료·첨가제	또는
촉매제의 제조·공급·판매	중지
및 회수) ①	<u>제7</u>
4조제6항	
②제74조	제6항
<u><</u> 삭 제>	

- 다)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국내에 판매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및 승합자동차(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)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 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, 지원금의 지원기준, 기준별 지급액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 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

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위탁 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제76조의8(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)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(이하 "저탄소차협력금"이라 한다)을 부과・징수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 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「자동차관리 법」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승차인원 10인 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)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

<삭 제>

소차협력금은 「환경정책기본 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 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제77조(환경기술인 등의 교육) ① 전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 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③ <u>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</u> 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1조(재정적・기술적 지원) ① 제

]77조(환경기술인 등의 교육) ①
<u>환경부장관, 시·</u>
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
<u>.</u>
② <u>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</u>
대도시 시장은
③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
대도시 시장은
]8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) ①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16조제5항</u>에 따른 특별대 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 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 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. ~ 7. (생 략)
- ② ③ (생 략)

제85조(청문) 환경부장관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- 1. · 1의2. (생략)
-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
- 3. ~ 9. (생략)

제8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
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16조제6항
3의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5조(청문)
AIIOO工(-0 正)
·.
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36조제1항</u>
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89조(벌칙)

벌금에 처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<u>제36조</u>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 령을 위반한 자

5의2. ~ 10. (생략)

- 11. <u>제74조제3항</u>에 따른 자동차 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자
- 12. <u>제74조제4항 본문</u>을 위반하 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

13. (생략)

- 제9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6의2. (생략)
 - 7. 제51조제4항 본문·제6항 또는 <u>제53조제3항</u>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

<신 설>

9. ~ 10. (생략)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6조제1항
5의2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제74조제5항
12. 제74조제6항 본문
12. <u>四日二四日</u>
13. (현행과 같음)
제90조(벌칙)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7
<u>제53조제3항 본문·제5항</u>
8.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
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·환
불·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
아니한 자
9. ~ 10. (현행과 같음)

- 11.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 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2의5. (생 략) 3.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제 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. ~ 4. (생 략) 4의2.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. ~ 8. (생략) 9.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.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
 - 10. <u>제74조제5항</u>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
 - 11. <u>제74조제6항</u>을 위반하여 검 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 시한 자
 - 12. <u>제74조의2제2항제1호</u>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

11. 제74조제6항 본문
제91조(벌칙)
1. ~ 2의5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43조제5항</u>
3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48조의2제3항제1호
5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제74조제6항 본문</u>
10. <u>제74조제7항</u>
11. <u>제74조제8항</u>
12. 제74조의2제3항제1호

자

12의2. ~ 13. (생략)

제9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<u>제43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7. ~ 14. (생략)

제9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1의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<u>1의3.</u> · <u>1의4.</u> (생 략)

2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12의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92조(벌칙)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43조제4항</u>
7. ~ 14. (현행과 같음)
제94조(과태료) ①
,
1. •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
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
을 수립·제출하지 아니하거나
격한시젓계획을 부식하게 수

<u>인을 받지 못한 경우</u> 1의4.·1의5. (현행 제1호의3 및 제1호의4와 같음)

립·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

- 2. (현행과 같음)
- 2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의 구매·임차 비율 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자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 략) <신 설>

- 9. 제51조제5항(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10. ~ 12. (생략)
- 13. <u>제74조제4항제1호</u>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
- 14. <u>제74조제4항제2호</u>에 따른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58조의5제1항</u>
③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
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
<u>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</u>
험업무를 대행한 자
9.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
항에
01
 10. ~ 12. (현행과 같음)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 10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제74조제6항제1호</u>
 10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제74조제6항제1호</u>

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

<신 설>

<신 설>

15. • 16. (생략)

④ ~ ⑥ (생 략)

14의2.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14의3.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 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

15. • 16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